입 법 정 보

2019-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4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6
4.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6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7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9
8.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환경부)····· 10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산림청)····· 11
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13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15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5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5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해양수산부)16
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7
1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8
1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8
20.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1
2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1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2
2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3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4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5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26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6

3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8
3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31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2
4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33
41.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4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35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36
4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8
4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8
49.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39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9
5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0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40
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0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1
5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2

정부입법 예고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단층 발견시 행정안전부로 신고(안 제1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로 신고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시설물 준공후 별도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진인증기준을 확보한 시설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 세분화(안 제16조의3)

1)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폭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 산림 작물 피해복구 기

준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 정보제공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해신고 서식에서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아 해당 사항은 삭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시 피해자가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금 차원의 정부 지원보다는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림 산림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 추가(안 별표 1제2호다목)

1) 종전에는 농 산림작물이 폭염 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근거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도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산림부산물, 조경수 분재 산림작물”은 “산림작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나. 피해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피해신고시 풍수해 가입 동의 여부 추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아 피해신고서식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활용은 삭제토록 함

다. 어류 등(패류 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 근거 규정 수

정(안 별지 제2호서식)

1)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규정이 종전에는 재난구호및 재난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으로 잘못표기 되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수정함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자 기준 완화(안 제3조의8)

1)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를 기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등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4.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근거 규정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2018.12.24.)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의2)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4)

1)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망 운영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확히 함.

2) 신속 정확한 공연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연정보가 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 인터넷 고시, 기업비밀 비공개 등 공연정보 제공·전송 시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가 전산망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3)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시기(안 제10조) 개정

1)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산점 명확화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18. 12.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원산지표시 조사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통신판매의 범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단서조항 신설)

1)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표시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나. 농산물명의 제품명 사용 가공품의 의무표시 대상 조정(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1) 농산물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표시에서 원산지표시법의 표시대상이아니거나 식품표시법 상 원료명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안 제3조 제5항제5호의2 신설, 별표2)

1)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양고기에서 염소고기를 구분하고 염소고기를 별도의 표시 대상으로 추가하고, 별표2에 미표시 과태료부과 근거 포함

라. 음식점 가공품 사용시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제10호)

1)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시 주원료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개정

마. 원산지조사 자체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신설)

1) 자체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1) 원산지 검정기관이 검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원산지표시 위반 교육대상자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호, 2호)

1) 교육 대상자 중 원산지 2회 미표시자 산정을 위한 기간을 2년이내 2회로 결정

아. 원산지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규정

자.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안 별표 1의2 제1호가목)

1)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이내 2회 적발시 바로 과징금부과를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과방식을 개선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나.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1)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1)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2)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8.
- 마감일자 : 2019. 5. 20.

○ 「고등교육법」 개정(’18.12.18. 일부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본정보, 재정지원 현황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제1항 신설)

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다.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

8.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4. 12.

○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1)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해결책과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및 제7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다. 국민정책참여단 등 (제8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문단 (제9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축적된 과학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위해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 등 (제10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두도록 함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장은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바. 운영위원회 (제11조)

1) 제12조에 의한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사. 사무기구의 설치 (제12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5. 20.

○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구명 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개정)

1)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안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정하기 위함

나. 13인승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비 의무화 시행시기 유예 (부칙 개정)

1)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 13인승 낚시어선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 유예(’ 19.7.1 → ’ 20.1.1)하기 위함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5. 20.

○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은 법

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적합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청문 규정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항)

2)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항)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을 신설(안 제30조)

1)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제5호)

1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5. 20.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신설)

2) 혁신혁 제약기업의 지위승계시 위원회의 심의 적용배제 요건을 정함(안 제12조의 신설)

3)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정함(안제15조 신설, 별표1 신설)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4. 15.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병역준비역 등은 입영·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소집을 연기하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집·소집을 연기하지 않음.(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및 제8조)

1)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으로 보함.

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안 제13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위원회 결정 및 재심사 규정

1)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6조)

2)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있는 겨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등은 편입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함. (안 제17조)

3)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안 제18조)

마. 대체복무기관 (안 제20조)

1)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안 제22조 및 제23조)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며,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안 제26조)

1)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아.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1)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은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함. (안 제28조)

2)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등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함. (안 제29조)

자. 예비군 대체복무 (안 제30조)

1)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함.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4. 9.
- 마감일자 : 2019. 4. 15.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9. 4. 10.
- 마감일자 : 2019. 5. 20.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사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 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9. 4. 10.
- 마감일자 : 2019. 5. 20.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11.
- 마감일자 : 2019. 5. 21.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절차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운영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 제3조)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및 체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주요 추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 등(안 제7조～제10조)

1)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기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절차,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조건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라.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별표 1)

1) 항만하역, 예선, 선박연료공급 등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하역의 필수 항만서비스업을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항만운영협약 신청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함

2) 항만운영협약의 신청 방법과 업체 선정 방법 및 협약 체결 기간을 정하고,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범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마.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지원,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14조～제18조)

1)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및 항만서비스업체에 대해 감면되는 항만 시설사용료 대상을 명확히 정함

2)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운영 관련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 및 손실보상금의 부당수령금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1)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탁함

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11.
- 마감일자 : 2019. 5. 2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법의 근거조문을 단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하려는 것임

1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1. • 마감일자 : 2019. 5. 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임을 요구를 하여야 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나.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19.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11. • 마감일자 : 2019. 5. 21.

○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 19.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안 시행령 제1조의2)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토록 함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령 제10조)

1)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1)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조합을 포함

라.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1)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마.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근거 마련 (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1)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사.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20.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2.
- 마감일자 : 2019. 5. 22.

○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1)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2.
- 마감일자 : 2019. 5. 22.

○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청구·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안 별표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함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3)

1)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2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12.
- 마감일자 : 2019. 5. 22.

○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1)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4. 12.
- 마감일자 : 2019. 5. 22.

○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시료수거 절차를 규정하고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의 시료수거 절차 마련(안 제64조 제1항)

1) 시료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9조 제1항 별표 2)

1)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 부과

다. 법률개정에 따른 항번 변경 반영(안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5호)

1)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상 제7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12.
- 마감일자 : 2019. 5. 22.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5년의 가입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의 폐지 (시행령 제56조의5)

1)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5년 이내인 경우만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바, 가입가능기간을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34조제3항 개정)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제작사의 리콜정

보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상용차의 출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년 중·소형 경유차 및 ‘21년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안 별표 17 개정)

나.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안 별표 18 개정)

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 방법·내용 등을 명시(안 75조의2 신설)

라.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및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67조 제3항 개정)

마.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2년까지 허용(안 별표 17 개정)

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 종류 중,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포함하여 규정(안 별표 6 개정)

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현재 시행 중인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 등의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방재신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신설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연재해저감 목표를 마련하고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노출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 운영 (안 제29조의2)

1) 현재「기상법」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만 운영

2) 기상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연관되는 농업·생활·공업용수의 가뭄을 포함한 통합적 가뭄 예·경보의 법적근거를 마련

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경감 (안 제61조제3항)

1) 방재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기간 설정, 인센티브 부여 등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감사지적 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낮음

2) 공사 관련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 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다.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안 제16조의2)

1) 국토·환경 분야 등은 국가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이 없이 광역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만 수립

2)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을 위한「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라.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실시, 전문성 확보 등 제도보완

1) 재해영향평가 요청 전 “사전검토” 실시 (안 제4조제3항)

2) 착공·준공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안제6조제2항)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 *재해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및 평가기준 작성개발, 재해영향평가 효과분석 등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77조)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

시 시장을 포함(안 제 30조)

1) 개정 법률이 시·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나. 책임경영지원센터의 법률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처분을 달리하는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54조의9)

1) 개정 법률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으므로 시행령상의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하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시·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명시(안 제54조의17)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 권한을 주는 것은 제30조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무에만 해당하므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

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나.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다.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기존의 시행령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로 수정필요

* 법률의 규정순서가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재해·재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므로 시행령 순서도 이에 맞출 필요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5.

○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하자미보수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설계·감리업무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자활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1)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1)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1) 산림복원대상지에 대해서는 훼손원인, 훼손유형, 훼손정도 등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와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 평가 후에 산림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1)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1)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1) 산림복원 정책 개발·지원을 위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1)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3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1)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1)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4. 22.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1)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1)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1.

○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에 의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함(안 제36조의6제1항)

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36조의6제3항·제4항 신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
2)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이면서,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경력 2년이상과 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함

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15.
- 마감일자 : 2019. 5. 27.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 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6.
- 마감일자 : 2019. 5. 27.

○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

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 (별표 1)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6.
- 마감일자 : 2019. 5. 2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9.3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17.9월)’ 추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먼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개정(별표 4)

1) 기존에 먼지 배출영향분석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은 30년전 총먼지(TSP) 환경기준, 기존오염도는 미세먼지(PM10), 추가오염도는 총먼지(TSP)를 사용하던 불일치를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합리화

나. 총량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미적용(별표 6, 15)

1)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량제를 확대하면서 농도기준을 대기법의 130%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 효과 반감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 필요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 국회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폐지 결정(’19.3월)

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 마련(별표 6)

1) 대기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형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

법 허가배출기준이 소형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대기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 합리화 필요

라. 환경의 질 목표 수준 항목 조정(별표 7)

1) 총먼지(TSP)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PM10 중심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먼지 삭제,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 등 관리 필요 6개 항목을 신규 추가

4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6.
- 마감일자 : 2019. 5. 27.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는 의사상자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원의 신청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사상자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권리구제 관련 내용을 인정결과통보서에 반영하여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등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인정통보서로 변경하여 인정결과 외에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내용 추가

나.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에 지원내용 및 권리구제 안내 포함

다. 의사상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의사상자 이의신청 인정 통보서로 제목을 변경하여 지원내용, 대상, 신청기간제한 등 안내 추가

라. 의사상자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인정결과 외에 및 불인정 사유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실시

마. 의사상자 이의신청 불인정통보서 신설하여 이의신청 인정결과 통보 및 불인정 사유 안내 실시

41.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16.
- 마감일자 : 2019. 5. 27.

○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 ·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염도 등 세부 대상지역 설정(안 제32조의2 신설)

1) 필지별 토양 염도가 6.30dS/m 이상인 경우로서 염도 측정 오차 범위, 최소 설치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적용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6조 및 제26조)

1) 실습지 등 농지취득 인정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2)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7.

○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사업(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1)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소유와 실질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규정(안 제15조제1항)

1)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함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8.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로 규정

다.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7.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4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7.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명시(안 별표 4 신설)

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4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6호, 2019. 6. 12. 시행)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 보좌”를 “업무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다. 감정서 기재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 표현 일치(안 제15조)

라. 간이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 제33조의2 조문제목 변경에 따라 하위규정 조문제목 정비(안 제15조의2)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징수절차 정비(안 제21조제3항)

4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4. 17. • 마감일자 : 2019. 5. 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나,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에 대행기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곤란하므로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수수료 징수, 지정요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사무의 위탁, 수수료 징수,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허가의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18. • 마감일자 : 2019. 5. 29.

○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조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

표 3의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의3조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51조제2항)

49.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4. 18.
- 마감일자 : 2019. 5. 29.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시험 공고 기간, 평가 과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및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156호, 2018.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의 통보 대상과 대상 정보의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의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과 가입한 보험의 공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8.
- 마감일자 : 2019. 5. 2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송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7조)

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안 제28조 및 별표 1)

5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18.
- 마감일자 : 2019. 5. 28.

○ 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비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4. 19.
- 마감일자 : 2019. 5. 29.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

○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 제3항)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19.
- 마감일자 : 2019. 5. 29.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2)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5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19.
- 마감일자 : 2019. 5. 29.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는 등 재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5조의5제4항)

1) 경력에 의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사회보험 가입확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계정 분리(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 운용하고, 농업계정은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어업계정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5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19.
- 마감일자 : 2019. 5. 9.

○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 되어 시행예정(’ 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3)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4)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5)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1)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2)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3)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